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형 사 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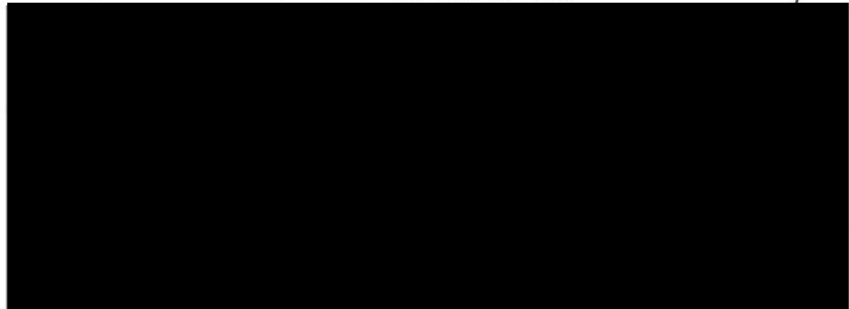
판 결

11803 4. 22 판 결 전 고
1183 4. 22 원 본 영 수

2874

사 건 83노 211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

피 고 인



항 소 인 검 사

검 사 김 [Redacted]

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83. 1. 31 선고 82고단 3391 판결

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원심판결 선고건의 구금일수중 65일음 위 형에 산입한다.

이 유 법사의 항소이유외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단데 있다.

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198

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
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
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적용 법조 죄위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제3조 제1항 제4호(징역명
선택), 형법 제57조.

1983. 4. 22.



재판장 판 사 이 영 준

판 사 이 홍 기

판 사 박 태 범

등 원 이 회

1983. 4. 22

수 원 사 회
법 원 서 무 장 교 관



180